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. 6. 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결정(변경)취지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
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
2. 위 치 : 서구 오류동 1639-12, -14번지
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○ 기반시설(주차장) 변경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-	3,300.4	-	3,300.4		
폐지	㉠	주차장	서구 오류동 410-37 일원	3,300.4	감)3,300.4	-	인고-366 (08.12.29)	일반공업 지역
신설	㉠	주차장	서구 오류동 1639-12	-	증)1,650.2	1,650.2	-	일반공업 지역
신설	㉠	주차장	서구 오류동 1639-14	-	증)1,650.2	1,650.2	-	일반공업 지역



○ 기반시설(주차장)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㉔	주차장	주차장㉔(3,300.4㎡) 폐지	주차장 건설 활성화 및 사업시행의 구분을 위해 폐지
㉔	주차장	주차장㉔(1,650.2㎡) 신설	주차장 건설 활성화 및 사업시행의 구분을 위해 신설
㉔	주차장	주차장㉔(1,650.2㎡) 신설	

나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○ 주차장 획지계획 변경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기 정			변 경			비 고
		면적(㎡)	획 지		면적(㎡)	획 지		
			위치	면적(㎡)		위치	면적(㎡)	
주차장 (P)	P3	3,300.4	①	3,300.4	3,300.4	①	1,650.2	획지 분할
						②	1,650.2	

○ 주차장 획지계획 변경 사유서

가구번호	위 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P3	P3-① → P3-①, P3-②	P3-①획지(3,300.4㎡)를 P3-①획지(1,650.2㎡)와 P3-②획지(1,650.2㎡)로 획지분할	주차장 건설 활성화

다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도면 번호	위 치		구 분	계획내용	
	기정	변경			
주차장 (P)	P1 ~ P7 ①	P1 ①	용 도	허용 용도	•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) •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비율은 연면적의 30%이내 [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: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 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, 문화 및 집회시설(종교집회장 제외), 판매시설(상 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), 운동시설(운동장, 골프연습장 제외),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]
		P2 ①			
		P3 ①, ②	불허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P4 ①			
		P5 ①	건폐율	90% 이하	
		P6 ①	용적률	900% 이하	
		P7 ①	높이(층)	-	
			형태	•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 지상부에 일부 주차장 설치 • 주차구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할 것 단, 불가피한 경우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가능	

라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4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계재 생략)

